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10. 25.(화)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종석 (043-719-2411)
		담당자	연구관 윤상현 (043-719-2414)

식약처, 냉동식품 분할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한다

- 소비자·업계 편의성 증대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식품업계의 **원활한 생산**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0월 25일 **개정·고시**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개선 과제('22.8.11)**

과제 29 냉장식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9.30~11.30, 행정예고)

과제 32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10.25, 개정·고시)

과제 70 냉동식품 해동유통 허용대상 확대(9.30~11.30, 행정예고)

(기타) **업계 건의사항** 실온제품을 냉동간편조리세트의 구성품으로 사용 허용(9.30~11.30, 행정예고)

□ 그간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 등이 우려돼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변화가 없도록 **작업 후 즉시 냉동**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 목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이 **모든 냉동식품**에 **허용**됩니다.

*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되는 **대용량 냉동 원료**의 경우 냉동 상태로 분할이 어려워 **현장에서 바로 사용·취급하기 어렵고, 해동하고 남은 원료**는 장기간 냉장보관 시 품질 저하로 **보관·관리**가 **어려워 폐기**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제조 현장에서 **대용량 냉동 원료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원활해지고 **원료 폐기량이 감소**되는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냉장보다 보존성이 좋은 냉동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므로 **위생·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고, 1인가구 시대에 적합한 **소용량 냉동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 례 >

(소비자 측면) 1인 가구 A씨는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조리하여 식사를 하는데, 조리시 양념에 필요한 냉동 다진마늘을 소량(10g) 사용하지만, 시중에는 1kg(냉동제품)의 제품이 주를 이루어 불필요하게 대용량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며 장기간 사용하게 되어 식재료 관리에 불편함을 느낌

☞ 소비자 필요에 맞춘 다양한 소용량 식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업자 측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B씨는 180kg 단위 냉동 과일농축액을 수입해 과일주스를 생산(생산 로트별 농축액 10kg 사용) 하고 있음. 해동량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면 3주에 한번씩 생산해야 해서 제품 판매와 거래처 관리가 어렵고, 납품 요구량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 남은 원료를 재냉동할 수 없어 품질저하로 폐기하는 경우 빈번

☞ 재냉동 허용으로 대용량 냉동 원료를 분할해 보관할 수 있어 제조사 계획에 따라 유연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제품의 원활한 생산·공급이 가능해짐. 아울러 남은 원료의 품질 변화, 폐기 걱정 없이 유통기한까지 소진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 환경개선에도 도움

□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